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☀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 성명 이주호 생년월일 94.10.1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(D유형) 안내유형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적용경비율 기준경비율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 ARS 개별인증번호

※ 사업장별 수입금액

사업자	AL-	수입 종류 구분코드	업종 코드	사업 형태	기장 의무	경비율	을 수입금액	기준	기준경비율 단	단순경	실비율
사업자 등록번호	상호	구분코드	코드	형태	의무	성미글		일반	자가	일반 (기본)	자가 (초과)
		사업소득지급명세 서 등 결정자료	940909	단독	간편장부	기준	4,976,965	18.9%	18.9%	64.1%	49.7%
		사업소득지급명세 서 등 결정자료	940910	단독	간편장부	기준	10,193,821	17.0%	17.0%	67.8%	54.9%
		사업소득지급명세 서 등 결정자료	940911	단독	간편장부	기준	59,964,116	23.5%	23.5%	67.3%	54.2%

※ 타소득(합산대상) 자료유무

소 득종류	이자	배당	근	로	연금	기타	
175π	이자	41 B	단일	복수			
해당여부	Х	Х	X	Х	Х	Х	

※ 종교인기타 소득유무: Χ

※ 공제 참고자료

구분		납입액(부담액)	공제 가능액	
기납부	중간예납세액(기납부세액)	0	중간예납세액 전액	
세액	원천징수세액 (인적용역 사업소득)	2,253,980원	원천징수세액 전액	
소득 공제 항목	국민연금보험료	1,349,640원	납부액전액	
	개인연금저축	0원	납입액의 40%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	
	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(노란우산공제)	0원	납입액과 200만원(사업소득 1억원초과), 300만원(사업소득 1억원이하), 500만원(사 업소득 4천만원이하) 중 적은 금액	
세액 공제	퇴직연금세액공제	0원	하단 참고사항을 확인하세요	
항목	연금계좌세액공제	0원	아닌 삼고사왕을 확인하세요	

- 1)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) 이하인 거주자는 15% ㄱ) 50세 이상: 납입액[한도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] ㄴ) 50세 미만: 납입액[한도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)] 2)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) 거주자는 12% ㄱ) 50세 이상: 납입액[한도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] ㄴ) 50세 미만: 납입액[한도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)] 읍)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) 초과자는 300만원한도 12%

※ 가산세 항목					
가산세 항목	가산세 적용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				
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	산세 추계신고시				
(세금)계산서관련 보고불성실	미(지연) 제출금액 0 원		0 원		
현금영수증미가맹					
현금영수증미발급	미발급 금액 0 원		0 원		
현금영수증발급거부	10만원 미만 0건 10만원이상		0 원		
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		0 건	10만원이상		0 원
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	무	과소신고	고금액		0 원
사업용계좌미신고					

☀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 2018귀속		2019귀속	2020귀속	
종합소득금액	종합소득금액 20,415		25,419	
소 특공제 1,500		1,500	2,858	
과세표준 18,915		22,756	22,560	
세율	15.00 %	15.00 %	15.00 %	
산출세액 1,757		2,333	2,304	
공제·감면세액	90	70	70	
결정세액 1,667		2,263	2,234	
실효세울 8.81 %		9.94 %	9.90 %	

※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

(단위 : 천원)

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귀 속 연 도	2018년	2019년	2020년
수입금액	56,557	67,123	73,941
필요경비	36,141	45,848	48,602
소 득금 액	20415	21275	25339
소득률(당해업체)	36.10 %	31.70 %	34.27 %

※ 2020년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(주사업장 기준)

계정과목	금액	당해업체(%)	업종평균(%)
4.복리후생비	0	0.00	0.65
18.접대비	11,000	14.88	0.97
19.광고선전비	0	0.00	1.79
22.차량유지비	0	0.00	0.42
24.지급수수료	11,158	15.09	9.07
28.소모품비	15,271	20.65	1.86
34.기타판관비	0	14.88	3.29

☀ 2021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분석

ж 2021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분석						
구분	합계	신변잡화구입	가정용품구입	업무무관 업소이용	개인적치료	해외사용액
건수	0	0	0	0	0	0
금액	0	0	0	0	0	0

☀ 소득세 개별분석자료: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대상자

※ 업종별 유의사항

업 종	업종코드	신고시 유의할 사항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40911	○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○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. ○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(1,200만원)을 적용하여야합니다. ○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, 복리후생비,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없습니다.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「보험업법」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,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「소득세법」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습니다.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, 계속·반복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.

(단위 : 천원)